

확 인 신 청 서

※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신청인	① 상 호					
	② 대표자		③ 사업자등록번호			
	④ 주 소	(전화:)				
⑤ 사업장 주소						
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내용						
⑥ 형식승인증서 번호	⑦ 품 명	⑧ 규격	⑨ 형식	⑩ 수량	⑪ 제조 (정비)번호	⑫ 제조 (정비)일자
⑬ 확인요청일자	년 월 일			⑭ 확인장소		
⑮ 비 고						

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
☐ 제조 ☐ 정비)확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제출하는 곳	대행검사기관(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, 선급법인)	처리부서	지역별 사무소
수 수 료	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	처리기간	5일
유 의 사 항	☐ 확인대상 ○ 제조확인대상 품목(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) ○ 정비확인대상 품목(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) ☐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(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) ○ 지정사업장의 명칭,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○ 지정 품명·형식 및 규격(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) ○ 제조일자 또는 정비일자 ○ 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 ☐ 검사의 생략 ○ 합격증서 또는 확인서로 확인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하는 검사는 합격한 것으로 본다.		